

第111回(臨時會) **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** 第1號(附錄)
財務建設委員會會議錄

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

目 次

- 1. 서울특별시종로구공동주택의관리와관련된분쟁조정에관한조례(안) 1面
- 2. 도시계획시설(여객자동차 정류장)·용도지역 변경결정(안)에 대한 의견청취 5面

1. 서울특별시종로구공동주택의관리와관련된분쟁조정에관한조례(안)

의안 번호	814
----------	-----

제출일자 : 2001. 5.
 제출자 : 종로구청장

1. 제정이유

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심사·조정을 하여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가 될 수 있도록 「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」 구성·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.(안제2조)
-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공동주택 단지 내 상호간 분쟁 등을 심사·조정함.(안 제3조)
-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 조정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 의결로써 60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함.(안 제7조제1항)
-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·진단·시험 등에 소요된 비용은 신청인이 이를 부담함.(안 제12조제1항)

3. 제정근거

-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의2(분쟁조정위원회)
- 서울특별시 주기58510-1734(2000.7.21)호 의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지시

4. 예산수반사항 : 필요(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수당)

5. 조례(안) : 따로붙임

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종로구공동주택등의관리에관련된분쟁조정에관한조례(안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령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등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에 대한 심사·조정 및 자문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종로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(이하 “조정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조정위원회의 구성) ①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종로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소속 공무원 중 4인 이내
2.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공동주택관리와 관련(회계, 경영, 건축공학, 법률학과 등)이 있는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.
3. 판사·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
4. 각 분야별 전문가(회계사, 세무사, 건축사, 노무사, 기술사, 주택관리사 등)로서 자격증 소지자
5. 공동주택 지역출신 구의원
6.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
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④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⑤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주재한다. 다만,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3조(심사·조정대상)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분쟁을 심사·조정한다.

1. 공동주택의 공용부분, 공동주택의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·보수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분쟁
2.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·청소·소독 및 쓰레기수거와 관련된 분쟁
3.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의 납부와 관련된 분쟁
4. 기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 및 자문

제4조(조정위원회의 회의) ①조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조정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, 정기회의는 반기1회, 임시회의는 분쟁조정 등 사안 발생시 소집한다.

③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④조정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,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과장이, 서기는

소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.

제5조(조정신청의 통지) ①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조정에 응할 것인지에 관한 의사를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.

제6조(조정의 거부 및 중지) ①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인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②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경위·조정거부 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
③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소를 제기한 때에는 조정을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7조(처리기간) ①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.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60일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②조정위원회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 기타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8조(조사 및 의견청취) ①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이나 종로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에 출입하게 하여 조사할 수 있다.

②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또는 관계 기관 전문가로 하여금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9조(조정 전 합의) 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쌍방이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한 때에는 당해 사건에 대한 조정을 중단하고 분쟁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즉시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,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서명·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하고 구청에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0조(조정·심사) ①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③당사자간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,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·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하고 구청에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1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당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거나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에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조정 청구사건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
②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·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.

③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당해 조정 청구사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.

제12조(비용의 부담) ①분쟁조정을 위한 감정·진단·시험 등에 소요된 비용은 신청인이 이를 부담한다. 다만, 당사자간에 이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.

②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예납하게 할 수 있다.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2. 도시계획시설(여객자동차정류장)·용도지역 변경결정(안) 의견청취

I. 안건명 : 도시계획시설(여객자동차정류장)·용도지역 변경결정(안) 의견청취

II. 도시계획변경결정(안) 조서

1. 도시계획시설(여객자동차정류장) 변경결정(안) 조서

구분	시 설 명	위 치	면적(m ²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	
폐지	여객자동차정류장	종로구 평창동 148-16일대	7,736	감)7,736	0	'79. 6.26	

2.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(안) 조서

지역		위 치	면적(m ²)	비 고
변 경 전	변 경 후			
일반주거지역	제2종일반주거지역	종로구 평창동 148-16일대	6,893	여객자동차정류장해제지역 (최고고도지구)
일반주거지역	제1종일반주거지역	종로구 평창동 148-9일대	843	여객자동차정류장해제지역 (자연경관지구)

III. 제안사유

- 우리 구 관내 평창동 148-16일대 도시계획시설(여객자동차정류장)·용도지역 변경결정(안)을 공람
공고하고
- 도시계획법 제22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7항 규정에 의거 우리 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
함.

IV. 기타

1. 공람공고에 대한 주민 및 관련기관 의견

연번	안 건 명	주 민 의 건	비고
1	도시계획시설(여객자동차 정류장)·용도지역 변경결정(안)	의견 없음	
2	(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)	자동차정류장(시내버스차고지)정비방안(2000. 11. 9)의 기준 및 내용에 의한 검토를 선행하고 결정 신청시에는 동 검토내용을 첨부할 것.	
3	(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)	도시계획조례 제29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이하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함.(변경결정(안) 조서에 7층 이하 지역임을 명시)	

따로붙임 : 위치도 1식. 끝.

